19.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	발의	일자	:	2021년	1 4월	2일
--	----	----	---	-------	------	----

□ 발의의원 : 홍인표, 강성환, 김대현, 김원규, 김태원, 김혜정, 배지숙,

이태손, 정천락 의원

□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
□ 상정일자 :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경제환경위원회(2021년 4월 15일),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**요**지(제안설명자 : 홍인표 의원)

□ 제안이유

O 상위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,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조례의 법적근거를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함. (안 제1조)
- O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. (안 제21조)
- 상위법률에 맞게 조문을 정비함. (안 제32조)

3. 검토보고 요지(보고자 : 전문위원 이충호)

□ 적법성 여부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되어 시행(2021년 6월 10일)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변경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□ 주요 검토사항

O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

안 제1조 및 제21조 제1항에서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'도시숲법')이 2021년 6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법적근거를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도시숲법」으로 변경함.

안 제21조 제4항에서는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함.

안 제32조 제2항에서는 「주택법」 개정('16. 1. 19)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.

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그동안 도시숲과 관련된 사항이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규정되어 오다 2020년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새롭게 제정되고 시행('21. 6. 10.) 예정임에 따라 법 시행이전에 조례를 법률에 맞게 변경하고, 관련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명확히 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음.
- 다만, 본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관련 **법률이 개정*** 된 후 많은 시간이지난 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집행부에서는 소관조례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임.
 - * 「주택법」 개정('16. 1. 19): 「사용검사 등」에 관한 사항이 제29조에서 제49로 바뀜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O 해당 없음.

5. 토론요지

O 해당 없음.

6. 수정안 요지

O 해당 없음.

7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(출석위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O 해당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O 해당 없음.